

<붙임> 지도전문의 교육관련 참고사항

□ 지도전문의의 정의

- 지도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전공의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4시간)을 받은 전문의를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 등에 적용한다.
- 수련병원(기관)장은 해당 병원의 해당 전문과목에 소속된 전속전문의 중에서 지도전문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원책정지도전문의의 정의

- 정원책정지도전문의는 전공의법 제12조에 따른 지도전문의 중 동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을 모두 이수한 지도전문을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
- 정원책정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국내 연구년)는 1년을 인정한다.

□ 지도전문의의 정기교육

-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정기교육(8시간)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 받은 경우 포함) 받은 사람의 경우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 정기교육은 3년마다(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말함)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 받은자의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교육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2012년 9월 30일 이전의 지도전문의(수련병원에서의 종사 경험이 1년 이상인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주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2년 10월 1일 이후의 지도전문의(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최초 교육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조건부 인정(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633(2020.5.20.))

적용대상	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정기교육을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 (대면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9.30 이전까지 공통교육(온라인, 4시간)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우선 인정(정원책정지도전문의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책정 등에 불이익 없음)- 추후 학회교육(4시간)은 '21.12.31까지 이수 완료 조건